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150
------------	------

2019년 11월 2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9년 11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

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6.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공자전거(일명 “따릉이”) 이용요금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일명 “제로페이”)으로 결제하는 경우 50%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하되 현행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당초 서울시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당시 교통문화교육원, 공영주차장 및 인재개발원 등의 이용료를 5~30% 범위 내에서 ‘19년 12월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17개 조례를 제출한 바 있으며, 제 290회 정례회에 각 시설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년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출한 상태임¹⁾
- 다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에 대한 할인 근거 마련은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의결²⁾되었으며, 다른 시설 이용료 할인폭 보다 큰 50% 범위에서 감면하도록 한 바 있음
- 동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는 일일권은 지난 9월부터 50% 할인, 정기권은 지난 11월부터 30% 할인한 결과(9.26~11.14) 제로페이 이용실적(60,515명)은 전체 이용실적(660,546명)의 약 9.2%, 이용금액(113백만원)은 전체 이용금액(1,542백만원)의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설에 비해 제로페이 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할인폭과 공공자전거의 이용계층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1) 행정자치위원회 5건, 기획경제위원회 1건, 환경수자원위원회 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건, 보건복지위원회 5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건, 교통위원회 3건

2) 이승미 의원외 10인 발의(의안번호 제894호), ‘19.8.28일 의결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확산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 저변 확대 및 결제수단 다양화, 시설 이용요금 인하 및 제로페이 활성화 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경우 1일권은 1,000원, 1주일 정기권은 3,000원에 불과하고, 기타 정기권 요금도 매우 저렴한 상태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추가적으로 할인함에 따라 공공 자전거 이용요금이 과도하게 낮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감면율과 유사하게 적용할 경우 '20년 한 해 동안 약 23억9천만원에 이르는 공공자전거 이용수입이 감소³⁾될 것으로 추계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 참고 :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및 제로페이 할인에 따른 요금

구 분		일일권(50%감면)	정기권(30%감면)			
		1일	1주일	1개월	6개월	1년
1시간	감면 전	1,000	3,000	5,000	15,000	30,000
	감면 후	500	2,100	3,500	10,500	21,000
2시간	감면 후	2,000	4,000	7,000	20,000	40,000
	감면 후	1,000	2,800	4,900	14,000	28,000

3) 제로페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전체 수입 예측액은 100억 79백만원으로 예측되고, 제로페이 감면 금액은 전체 수입액의 약 23.7%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326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326호, 2019. 9. 26.></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326호, 2019. 9. 26.></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 <u>2020년 12월 31일</u>-----.</p>